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44489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25. 선고 2015구합6483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6306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9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22.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5. 귀속분까지 55,753,550원에 대한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4. 귀속분까지 112,329,020원에 대한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5. 귀속분까지 22,627,50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4. 귀속분[1] 또는 2014. 5. 귀속분까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계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1)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 10. 16.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의 '항소취지'란에 기재된 '2014. 5. 귀속분'은 '2014. 4. 귀속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3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사업장 명	면세점 여부	폐업 여부 등	주소
명동본점			<명동사옥>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동영업부	○		
명동스타PB센터	○	2011. 12. 19. 이전	
명동법인영업부	○		
서여의도본점			<서여의도사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 (여의도동 15-22)
서여의도영업부	○		
서여의도법인영업부	○		
여의도본점			<여의도사옥>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36-3)
증권대행부			
여의도법인영업부	○		
여의도영업부	○		
종암동지점	○		<종암동 사옥>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 (종암동 8-2)
신용여신관리센터			
담보여신관리센터			
기업여신관리센터	○	2010. 7. 16. 폐업	
경매소송관리센터	○	2010. 7. 16. 폐업	
동부여신관리센터			
중부여신관리센터			
서부여신관리센터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			

3. 이 사건 계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비록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로 독립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2) 갑 6호증의 1, 3, 5, 갑 10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3호증, 을나 4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의 1, 2, 을나 5,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물적 설비가 본점 등 다른 사업장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❷ 원고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본사는 내부적으로 영업그룹, 기업금융그룹 등으로 나뉘는데, 명동영업부, 서여의도영업부, 여의도영업부는 영업그룹 직속, 명동법인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법인영업부는 기업금융그룹 직속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속된 조직은 본사 그룹이 직접 그 통할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일반적인 영업점에 비추어 그 독립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❸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본사 그룹 조직들 등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❹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명동법인영업부의 직원 수(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30여명, 10여명, 20여명)는 명동본점의 직원 수(약 530여명)에 비하여 훨씬 적고, 종암동지점의 직원 수(19명)는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의 직원 수(105명, 112명)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사업장들만을 별개의 영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❺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본사 인력지원부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❻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계쟁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계쟁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송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부과처분 내역

징수기관	비고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일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1,256,330	927,790	2,184,120	2014.07.20	갑 제1호증의1
		200908		2,877,650	2,098,380	4,976,030	2014.07.20	갑 제1호증의2
		200909		1,865,650	1,342,660	3,208,510	2014.07.20	갑 제1호증의3
		200910		1,144,250	820,990	1,965,240	2014.08.11	갑 제1호증의4
		200911		3,114,490	2,206,600	5,321,090	2014.08.11	갑 제1호증의5
		200912		3,552,750	2,483,010	6,035,760	2014.08.11	갑 제1호증의6
		20100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1,074,330	741,170	1,815,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7
		201002		3,077,940	2,097,600	5,175,540	2014.08.11	갑 제1호증의8
		201003		1,381,180	927,590	2,308,770	2014.08.11	갑 제1호증의9
		201004		1,323,230	877,560	2,200,790	2014.08.11	갑 제1호증의10
		201005		2,894,950	1,893,000	4,787,950	2014.08.11	갑 제1호증의11
		201006		2,373,960	1,529,540	3,903,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12
		201007		1,215,840	772,770	1,988,610	2014.08.11	갑 제1호증의13
		201008		2,925,060	1,831,960	4,757,020	2014.08.11	갑 제1호증의14
		201009		1,684,960	1,039,610	2,724,570	2014.08.11	갑 제1호증의15
		201010		1,213,220	737,630	1,950,850	2014.08.11	갑 제1호증의16
		201011		3,201,360	1,917,610	5,118,970	2014.08.11	갑 제1호증의17
		201012		3,230,100	1,904,780	5,134,880	2014.08.11	갑 제1호증의18
		201101		1,497,420	869,090	2,366,510	2014.08.11	갑 제1호증의19
		201102		3,122,120	1,785,840	4,907,960	2014.08.11	갑 제1호증의20
		201103		1,316,630	740,460	2,057,090	2014.08.11	갑 제1호증의21
		201104		1,309,280	724,540	2,033,820	2014.08.11	갑 제1호증의22
		201105		2,956,070	1,609,280	4,565,350	2014.08.11	갑 제1호증의23
		201106		2,546,150	1,362,440	3,908,590	2014.08.11	갑 제1호증의24
		201107		1,234,890	649,360	1,884,250	2014.08.11	갑 제1호증의25
		201108		2,534,950	1,307,020	3,841,970	2014.08.11	갑 제1호증의26
		201109		1,759,460	893,450	2,652,910	2014.08.11	갑 제1호증의27
		201110		1,195,010	595,710	1,790,720	2014.08.11	갑 제1호증의28
		201111		2,619,730	1,280,770	3,900,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29
		201112		5,590,940	2,684,760	8,275,700	2014.08.11	갑 제1호증의30
		201201		1,292,180	608,480	1,900,660	2014.08.11	갑 제1호증의31
		201202		2,553,360	1,178,620	3,731,980	2014.08.11	갑 제1호증의32
		201203		1,110,090	502,750	1,612,840	2014.08.11	갑 제1호증의33
		201204		1,049,260	465,760	1,515,020	2014.08.11	갑 제1호증의34
		201205		2,786,030	1,209,960	3,995,990	2014.08.11	갑 제1호증의35
		201206		1,349,680	574,410	1,924,090	2014.08.11	갑 제1호증의36
		201207		1,389,700	576,530	1,966,230	2014.08.11	갑 제1호증의37
		201208		2,297,280	934,980	3,232,260	2014.08.11	갑 제1호증의38
		201209		1,417,880	564,310	1,982,190	2014.08.11	갑 제1호증의39
		201210		966,770	375,190	1,341,960	2014.08.11	갑 제1호증의40
		201211		2,296,060	858,010	3,154,070	2014.08.11	갑 제1호증의41
		201212		3,419,210	1,266,470	4,685,680	2014.08.11	갑 제1호증의42
		201301		865,400	225,490	1,090,890	2014.08.11	갑 제1호증의4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01302		2,635,080	665,080	3,300,160	2014.08.11	갑 제1호증의44
		201303		1,129,590	274,930	1,404,520	2014.08.11	갑 제1호증의45
		201304		1,407,530	329,920	1,737,450	2014.08.11	갑 제1호증의46
		201305		2,608,580	587,180	3,195,760	2014.08.11	갑 제1호증의47
		201306		1,358,630	293,590	1,652,220	2014.08.11	갑 제1호증의48
		201307		1,017,640	209,830	1,227,470	2014.08.11	갑 제1호증의49
		201308		2,356,100	465,320	2,821,420	2014.08.11	갑 제1호증의50
		201309		1,855,700	349,790	2,205,490	2014.08.11	갑 제1호증의51
		201310		1,053,960	188,540	1,242,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52
		201311		2,329,560	396,480	2,726,040	2014.08.11	갑 제1호증의53
		201312		3,288,020	529,040	3,817,060	2014.08.11	갑 제1호증의54
		201401	종업원분 주민세	1,356,430	205,630	1,562,060	2014.08.11	갑 제1호증의55
		201402		2,746,880	393,340	3,140,220	2014.08.11	갑 제1호증의56
		201403		1,389,050	185,980	1,575,030	2014.08.11	갑 제1호증의57
		201404		1,290,320	160,380	1,450,700	2014.08.11	갑 제1호증의58
		201405		2,972,520	343,620	3,316,140	2014.08.11	갑 제1호증의59
합 계				120,668,380	55,584,720	176,253,110		

본점지	회사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 처분일	비고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36-3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1,071,650	791,410	1,863,060	2007.07.21.	갑 제3호증의1
		200907		970,720	716,870	1,687,590	2007.07.21.	갑 제3호증의2
		200908		2,430,570	1,772,360	4,202,930	2007.07.21.	갑 제3호증의3
		200908		2,295,580	1,673,920	3,969,480	2007.07.21.	갑 제3호증의4
		200909		1,508,720	1,085,670	2,594,390	2007.07.21.	갑 제3호증의5
		200909		1,453,780	1,046,130	2,499,910	2007.07.21.	갑 제3호증의6
		200910~200912		11,203,950 (가산세 포함)[1]			2007.08.13.	갑 제3호증의7
		200910~200912		10,502,81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8
		201001~201012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35,269,22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9
		201001~201012		33,230,74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0
		201101~201112		35,035,62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1
		201101~201112		34,284,47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2
		201201~201212		30,905,25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3
		201201~201212		30,470,75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4
		201301~201312		27,399,95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5
		201301~201312		27,177,60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6
		201401~201404	종업원분 주민세	10,689,26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7
		201401~201404		10,053,71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8
합 계				313,040,6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물건지	과표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 처분일	비고
서울 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2	5. 서울특별시 성북 구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2,260,700	1,690,550	3,951,250	2014.08.11	갑 제5호증의1
		200908		4,675,420	3,452,790	8,128,210	2014.08.11	갑 제5호증의2
		200909		3,324,360	2,423,120	5,747,480	2014.08.11	갑 제5호증의3
		200910		1,961,130	1,412,390	3,373,520	2014.08.11	갑 제5호증의4
		200911		5,117,400	3,639,490	8,756,890	2014.08.11	갑 제5호증의5
		200912		6,330,560	4,441,510	10,772,070	2014.08.11	갑 제5호증의6
		20100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990,590	686,060	1,676,640	2014.08.11	갑 제5호증의7
		201002		891,670	610,070	1,501,740	2014.08.11	갑 제5호증의8
		201003		2,593,900	1,749,080	4,342,980	2014.08.11	갑 제5호증의9
		201004		2,376,550	1,562,540	3,939,090	2014.08.11	갑 제5호증의10
		201005		5,619,840	3,689,970	9,309,810	2014.08.11	갑 제5호증의11
		201006		4,778,230	3,091,500	7,869,730	2014.08.11	갑 제5호증의12
		201007		367,780	234,740	602,520	2014.08.11	갑 제5호증의13
		201008		859,810	540,810	1,400,620	2014.08.11	갑 제5호증의14
		201009		564,060	349,540	913,600	2014.08.11	갑 제5호증의15
		201010		350,180	219,950	580,130	2014.08.11	갑 제5호증의16
		201011		1,130,580	680,260	1,810,840	2014.08.11	갑 제5호증의17
		201012		905,250	536,270	1,441,520	2014.08.11	갑 제5호증의18
		201101		433,490	252,760	686,250	2014.08.11	갑 제5호증의19
		201102		896,080	514,970	1,411,0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0
		201103		379,300	214,340	593,640	2014.08.11	갑 제5호증의21
		201104		401,430	223,220	624,6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01105		930,650	509,150	1,439,800	2014.08.11	갑 제5호증의23
		201106		726,530	390,720	1,117,2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4
		201107		397,800	210,350	608,1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5
		201108		775,250	401,810	1,177,060	2014.08.11	갑 제5호증의26
		201109		565,660	288,870	854,7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7
		201110		364,670	182,760	547,430	2014.08.11	갑 제5호증의28
		201111		816,890	401,570	1,218,460	2014.08.11	갑 제5호증의29
		201112		2,011,820	971,500	2,983,320	2014.08.11	갑 제5호증의30
		201201		483,330	228,890	712,220	2014.08.11	갑 제5호증의31
		201202		872,350	405,030	1,277,380	2014.08.11	갑 제5호증의32
		201203		495,260	225,630	720,890	2014.08.11	갑 제5호증의33
		201204		405,920	181,270	587,190	2014.08.11	갑 제5호증의34
		201205		997,330	435,820	1,433,150	2014.08.11	갑 제5호증의35
		201206		506,530	216,940	723,470	2014.08.11	갑 제5호증의36
		201207		538,010	225,420	763,430	2014.08.11	갑 제5호증의37
		201208		936,410	384,460	1,322,870	2014.08.11	갑 제5호증의38
		201209		627,100	251,270	878,370	2014.08.11	갑 제5호증의39
		201210		414,580	162,010	576,590	2014.08.11	갑 제5호증의40
		201211		1,040,630	397,930	1,438,560	2014.08.11	갑 제5호증의41
		201212		1,603,650	598,320	2,201,970	2014.08.11	갑 제5호증의42
		201301		352,380	92,740	445,120	2014.08.11	갑 제5호증의43
		201302		1,021,470	260,570	1,282,040	2014.08.11	갑 제5호증의44
		201303		449,970	110,740	560,710	2014.08.11	갑 제5호증의45
		201304		603,260	143,030	746,290	2014.08.11	갑 제5호증의46
		201305		1,000,840	227,980	1,228,820	2014.08.11	갑 제5호증의47
		201306		535,380	117,130	652,510	2014.08.11	갑 제5호증의48
		201307		410,380	85,720	496,100	2014.08.11	갑 제5호증의49
		201308		935,310	187,240	1,122,550	2014.08.11	갑 제5호증의50
		201309		796,910	152,360	949,270	2014.08.11	갑 제5호증의51
		201310		446,660	81,100	527,760	2014.08.11	갑 제5호증의52
		201311		958,090	165,650	1,123,740	2014.08.11	갑 제5호증의53
		201312		1,441,280	235,790	1,677,070	2014.08.11	갑 제5호증의54
		201401		552,380	85,230	637,610	2014.08.11	갑 제5호증의55
		201402	중입원분 주민세	940,150	137,160	1,077,310	2014.08.11	갑 제5호증의56
		201403		460,440	62,890	523,330	2014.08.11	갑 제5호증의57
		201404		489,220	62,120	551,340	2014.08.11	갑 제5호증의58
		201405		1,002,130	118,540	1,120,670	2014.08.11	갑 제5호증의59
합계				75,127,140	41,631,620	116,758,760		